매직카ACE업무용 자동차보험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1] 가입대상
- [2]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 [3] 보험계약의 성립
- [4] 청약철회
- [5] 보험기간
-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11] 자기신체사고
-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3] 자기차량손해
-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6] 용어정의

Ⅲ. 기타사항
- [17]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 [18] 보험계약의 승계
-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23]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 [24]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25] 대물배상 지급기준
-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27] 과실상계 등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 법

▣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가입대상
[3] 보험계약의 성립
[4] 청약철회
[5] 보험기간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0] 배상책임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3] 자기차량손해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3] 자기차량손해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Ⅰ.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 매직카ACE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을 포함하여,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5가지 담보종목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3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5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⑤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⑥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 보험료	=	기 본 보험료	×	특 약 요 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 별 요 율	×	우량할인·불량할증 요 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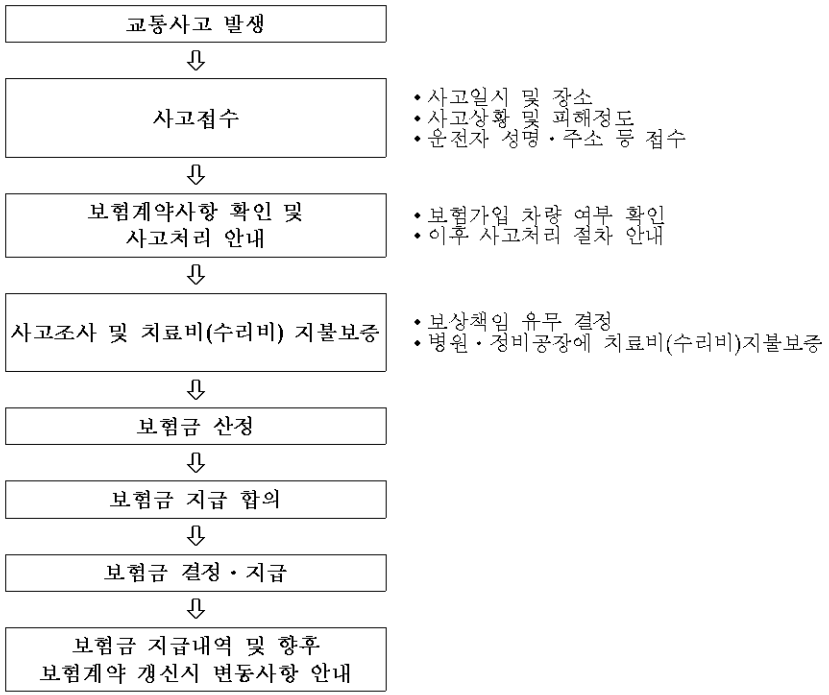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②)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⑪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㉖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 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 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①' 및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⑬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⓮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3)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⑮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⑫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6) 자기차량손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⑮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

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o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o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o	o	o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⑧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용어정의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운 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⑦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⑩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⑪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⑫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⑬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⑭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 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⑮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⑯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⑰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⑱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⑱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⑱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

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2)', '2.(1)' 또는 '18 보험계약의 승계'중 '1.(3)',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⑱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용어정의⑮)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경·3종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⑲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⑩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10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3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24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매직카*Basic*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25 대물배상 지급기준

매직카Basic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매직카Basic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27 과실상계 등

매직카Basic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운전자한정관련 특별약관
-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4)** 운전자연령 만30/35/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7)**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2)**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 **3)**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4. 자기신체사고관련 특별약관
-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2)** 부상가입금액확장 특별약관
- **3)** 안전벨트착용보상 특별약관
- **4)**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 **5)** 병실료차액보상 특별약관
- **3) Silver** 특별약관
- **4) Couple** 특별약관
- **5)** 여성성형비용 특별약관
- **6)** 자녀사랑 특별약관
- **7)** 주말사고위로금 특별약관
- **8)** 가족상해 특별약관
- **9)**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6. 자기차량손해관련 특별약관
- **1)** 차량수리비확장 특별약관
- **2)** 플러스차량담보 특별약관

3)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4) 신차전부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5) 레포츠용품담보 특별약관
6)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7. 기타 특별약관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3)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4)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5) 뉴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6) 지진 소요 위험담보 특별약관
7) 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1-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납입방법 \ 미납입보험료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2-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운전자연령 만30/35/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승합3종, 경승합 또는 화물4종, 경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35/43/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35/43/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35/43/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35/43/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승합3종, 경승합 또는 화물4종, 경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승합3종 및 경·4종화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7)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승합3종 및 경·4종화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⑱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⑤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을 사망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을 부상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④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⑤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⑥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⑦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생긴 때

⑨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⑩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와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기 1 또는 2 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1)'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5. 대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1. 보상내용 (2) ④'의 '벌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3) 사고처리지원금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때에는 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고처리지원금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로 남을 죽게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8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상급수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대물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위 '(1)'의 사고처리지원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 '(1)'에 의한 사고처리지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대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①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 제 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3)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내용

(1) 자기신체사고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 <별표>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위'①'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 내용 ② 부상보험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상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보험금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상해등급	부상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급	3,000	5,000	10,000
2급	1,600	2,700	5,400
3급	1,500	2,500	5,000
4급	1,400	2,300	4,600
5급	1,000	1,650	3,300
6급	800	1,300	2,600
7급	500	800	1,600
8급	360	600	1,200
9급	280	450	900
10급	240	400	800
11급	200	300	600
12급	120	200	400
13급	80	150	300
14급	40	60	120

4-3)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안전벨트착용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4)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간병인고용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매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5만원의 「간병인 고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5) 병실료차액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병실료차액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일의 범위내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입원 병실료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6) Silver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연령이 만50세 이상인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자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며느리 및 ⑥ 사위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만 5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을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뇌기능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뇌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을 뇌기능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요양시설이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1인당 1억원의 요양시설이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장례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7) Couple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의 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고도후유장해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고도후유장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가사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국내의료기관에 5일 이상 입원시 4일 초과일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의 가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사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사지원금의 계산 : (입원일수 - 4일) x 5만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여성성형비용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보험자

(2) 남성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원을 한도로 성형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한도로 치아보철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3)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건강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9) 자녀사랑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부상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자녀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자녀사망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사고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부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자녀성형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1센티당 10만원의 자녀 성형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4) 후유장해 지원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후유장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자녀학자금(장제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보험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자녀학자금과 장제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0) 주말사고위로금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보험금의 지급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1) 가족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사람**이라 함은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상해를 입은 때
⑦ 자동차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Ⅳ.보험금지급기준, [27] 과실상계 등' 미적용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Ⅱ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③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⑥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2)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교통승용구를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의 교통상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기차, 전철, 지하철, 항공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전세버스제외)
(3) 영업용 콜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영업용 콜밴**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승차정원 5인 또는 6인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② 피보험자의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③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⑦ 피보험자가 통상의 업무(교통승용구의 운전을 포함합니다.)로서 교통승용구에

탑승중 사망한 때
⑧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망한 때
⑨ 교통승용구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4. 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0.8.23, 2002.5.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6조의2관련)

1.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8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 사업
   승용자동차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것에 한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운송사업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5-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및 '⑪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⑪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 경·3종승합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⑱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자동차를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3)의 ⑦', 2.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은 다음의 ①로 대체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1. 보상책임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 경·3종승합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사고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1) 차량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2) ① 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미수선 수리비를 포함하며, 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차량의 대체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차량대체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2) 플러스 차량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13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1) 직접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가.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ㄱ)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ㄷ)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ㄹ)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간접손해

① 보험회사는 '(1)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ㄱ)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ㄴ)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ㄱ)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ㄴ)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③ 보험회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합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1) 직접손해'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3)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 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터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의한 손해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보상한도 및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터카 대차비용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의 대여자동차 요금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렌터카를 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렌터카 대차비용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③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

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3) 회사가 1.보상내용 (2)에 따라 지급하는 렌터카 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와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는 1.보상내용 (2)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위 (3)에 의한 금액에서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4) 신차전부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출고당시의 신차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출고된지 1년이내에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에 의한 자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부손해시 확대보상

회사는 위 '1. 보상내용'에서의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일부손해의 전부손해 확대보상

회사는 위 '1. 보상내용'에서의 손해가 일부손해인 경우일지라도 그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초과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5) 레포츠용품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재중인 피보험자의 레포츠용품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레포츠용품만의 손해와 레포츠용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레포츠용품**이란 골프용품, 스키용품, 낚시용품 또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0)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기 [1] 또는 [2] 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및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레포츠용품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적재물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5. 현물보상

회사는 레포츠용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6)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3)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가까운 호텔 등 유상의 숙박시설(거주시설을 제외합니다)에 임시로 숙박하는 1박분의 객실료(음식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사고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귀택하기 위한 교통비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 1. 보상내용에서 **원격지**라 함은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져 있고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시 또는 군의 경계를 달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만, 「임시숙박비용 보험금」 및 「임시귀택비용 보험금」 규정에 있어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정규승차용 구조장치에 탑승중인 자를 말합니다.

4.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5.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임시로 숙박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6.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내에서 귀택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2)의 ⑤', '(3)의 ⑤', '(4)의 ⑨', '(5)의 ⑤' 및 '(6)의 ⑤'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7-3) 공작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덤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7-4) 농경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5) 뉴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1. 서비스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 있어 전 조의 서비스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의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휘발유 3ℓ / 경유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밧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밧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밧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①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새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다만, 외제차량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7) 라지에타캡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 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전조등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전구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 할로겐 전구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의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하여 윈도우브러쉬를 운전석에 한하여 새 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시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2) 긴급구난서비스

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 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4) 차량진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 액, 타이밍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5)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6) 수리차량운반 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4. 매직카서비스의 제한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중 (1) ~ (13)항의 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5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산간지역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매직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위 '2' 전 조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6) 지진 소요 위험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3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14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의 ②,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2) 소요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소요라 함은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한 지방(地方)에서 폭행이나 손괴(損壞)로 사회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7) 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⑩배상책임, ⑪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⑫무보험차상해, ⑬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할 '(1)'의 사고로 동일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을 포함합니다.),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⑭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일반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②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